

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

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1조 ~ 제2조 <생략> 제3조 (발주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) ⑤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구매기업의 사정으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않기로 합니다. 제4조 ~ 제18조 <생략></p>	<p>제1조 ~ 제2조 <좌동> 제3조 (발주서에 대한 대금의 지급) ⑤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 제4조 ~ 제18조 <좌동></p>	<p>-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</p>

2. 개정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: 2021년 4월 20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